학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며,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격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4, 2011. 3. 1)

제2조 (교육조직) ① 본 대학교에 단과대학으로 인문사회대학·경영대학·생명보건대학・공과대학・AI융합대학・예체능대학 · 더:함교양대학 · 미래융합대학을 두며, 융합교육 운영을 위해 융합학부를, 더:함교양대학에 창의교양학부, 혁신융합학부를, 국제화 교육을 위해 국제학부, 국제산학융합학부를 둔다. (개정 2002. 2. 25, 2003. 3. 24, 2004. 2. 24, 2004. 11. 26, 2005. 12. 12, 2007. 2. 8, 2008. 8. 4, 2010. 2. 22, 2013. 3. 1, 2014. 3. 1, 2015. 9. 1, 2016. 3. 1. 2017. 3. 1, 2018. 3. 1. 2019. 5. 4, 2019. 8. 26, 2020. 3. 1, 2023. 2. 6, 2024. 3. 1)

② 본 대학교에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연합신학전문대학원, 벤처대학원 및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을, 특수대학원으로 경영대학원・교육대학원・문화복지상담대학원・스포츠과학대학원 및 글로벌창업대학원·산학융합대학원 및 벤처기술창업대학원을 두고, 학연산협동과정은 따로 둔다.(개정 2008. 8. 4, 2012. 3. 1, 2015. 3. 1, 2016. 3. 1, 2020. 3. 1, 2024. 3. 1)

③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대학원 및 학연산협동과정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되, 대학원의 구분에 따라 통합한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조 개정 2001. 9. 24, 2002. 2. 25, 2008. 8. 4)

④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⑤ 국제학부 및 국제산학융합학부 학사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3. 1.)

제3조 (학생정원) ① 단과대학별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학부・학과 또는 전공별 모집단위를 두며, 입학정원은 <표-1>과 같다. (개정 2001. 9. 24, 2003. 10. 2, 2005. 12. 30, 2008. 8. 4, 2010. 2. 22, 2010. 3. 1, 2013. 3. 1, 2013. 6. 18, 2014. 4. 21, 2016. 3. 1, 2017. 3. 1, 2018. 3. 1, 2019. 3. 1, 2020. 3. 1., 2021. 3. 1, 2022 3. 1, 2023. 2. 6, 2024. 3. 1, 2024. 8. 26)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입학시킬 수 있다. (신설 2000. 6. 1)

③ 각 단과대학에는 제1항의 전공이외에 다음의 전공을 둘 수 있다. (신설 2002. 2. 25, 2008. 8. 4)

1. 2 이상의 전공(학과), 2 이상의 학부 또는 전공(학과)과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2.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맞춤형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 8. 4)

⑤ 제4항에 따른 계약학과의 명칭・교육과정과 수업・학생선발・학생정원・수업료 및 설치・운영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학과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 8. 4, 2011. 3. 1)

제3조의 2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등) 성에 의한 차별 금지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2020. 4. 23.)

① (삭제 2008. 8. 4)

② (조 신설 2001. 3. 26, 삭제 2008. 8. 4)

[제목변경 2020. 4. 23.]

제3조의 3 (인권센터) ①대학은 고등교육법 제 19조의3 제 1항에 따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인권센터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22. 8. 25.]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 (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과의 수업연한은 5년(10학기)으로 한다. (개정 2001. 9. 24, 2002. 2. 25)

②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2개학기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이하 "조기졸업"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 8. 4)

③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간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과정(이하 "학위연계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는 학생은 수업연한을 1학기 조기졸업 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 8. 4)

제5조 (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01. 9. 24, 2002. 2. 25, 2009. 3. 1, 2012. 3. 1)

② (삭제 2009. 3. 1)

③ (삭제 2012. 3. 1)

④ (삭제 2012. 3. 1)

⑤ (삭제 2012. 3. 1)

제6조 (삭제 2000. 6. 1)

제 3 장 학년도·학 기

제7조 (학년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 8. 4, 2011. 3. 1)

제8조 (학기)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하되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2011.3.1, 2012.3.1)

1. 제1학기 (개정 2008. 8. 4, 2016. 9. 1)
2. 제2학기 (개정 2008. 8. 4, 2016. 9. 1)
3. 계절학기 : 필요에 따라 방학기간 중에 계절 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 8. 4)
4. 학기의 일정에 관한 사항은 매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 (신설 2016. 9. 1)

② <삭제 2011. 3. 1>

③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 8.

26)

제 4 장 교원 수업일수와 휴업일, 임용

제9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며,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 8. 26)

② 천재지변, 기타 학사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2주 범위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09. 3. 1)

③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36조에 따른 학점당 이수단위(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이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신설 2019. 8. 26)

④ 제3항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집중수업(이하 "집중이수제"라 한다)을 개설하여 학기 몰입형 및 계절 몰입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 8. 26, 2024. 3. 1)

제9조의 2 (교원의 임용) 본 대학교의 재임용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규정에 준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05. 3. 8)

제10조 (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법정공휴일 과 토·일요일(개정 2008. 8. 4, 2011. 3. 1)
4. <삭제 2011. 3. 1>

제11조 (임시휴업) ① 학사일정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0조의 휴업일에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②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③ 휴업일에도 필요에 따라 실험이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 5 장 입 학 (재・편입학 포함)

제12조 (입학 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개시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편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의 입학은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 이내로 허가한다. (개정 2008. 8. 4, 2015. 3. 1)

제13조 (입학자격)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8. 4)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단, 졸업예정자일 경우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15. 3. 1)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08. 8. 4)
3. (삭제 2008. 8. 4)
4. (삭제 2008. 8. 4)

제13조의 2 (정원외 입학)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교육부)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며 정원외 입학은 본 대학교의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른다.(신설 2013. 3. 1, 개정 2015. 3. 1, 2016. 3. 1)

제14조 (재입학) ①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자는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1)

② (삭제 2001. 3. 26)

③ 학생활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④ 재입학의 전형 방법 및 교육과정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2012. 3. 1)

⑤ 재입학은 결원이 있을 때 재적하였던 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한다.(2003. 3. 24)

제15조 (편입학) ① 제3학년(다만,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은 3학년 또는 4학년으로 입학 가능)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제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하고, 학생활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편입학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 8. 4, 2010. 2. 22)

②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입학정원 외로 제3학년에 학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개정 2008. 8. 4, 2015. 3. 1)

③ 편입학의 전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제16조 (편입학 정원) 편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개정 2001. 3. 26, 2003. 3. 24, 2008. 8. 4, 2015. 3. 1)

제17조 (지원절차) ① 입학지원 절차 및 구비 서류는 모집 요강에 의한다. (개정 2008. 8. 4)

②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치 않는다.(개정 2008. 8. 4, 2015. 3. 1)

③ 입학전형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에 따른다. (신설 2015. 3. 1)

제18조 (입학전형) ① 신입학자의 선발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및 고사성적(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과, 수학계획서·자기소개서 등 교과 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6. 1)

② (삭제 2008. 8. 4)

③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임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0. 6. 1, 2008. 8. 4)

④ 입학전형의 방법·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하여는 해당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른다. (개정 2008. 8. 4, 2012. 3. 1, 2015. 3. 1)

⑤ 지역인재전형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5. 3. 1)

⑥ 대학별고사를 시행함에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하며, 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으로 정한다. (신설 2015. 3. 1, 개정 2016. 3. 1)

제18조의 2 (입학사정관) 다양하고 공정한 입학정책의 연구개발 및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을 두며, 그 임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 3. 1, 개정 2016. 3. 1, 2024. 8. 26)

제19조 (삭제 2000. 6. 1)

제20조 (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항 신설 2015. 3. 1, 개정 2016. 9. 1)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1.)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6. 9. 1)
2. 지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 9. 1)
3.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학교장)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호 신설 2016. 9. 1)
4.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호 신설 2016. 9. 1)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호 신설 2016. 9. 1)

제21조 (보증인) 보증인은 당해 학생의 학부형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생이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만한 자라야 한다.

제22조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1, 2008. 8. 4)

제22조의 2 (시간제 등록생) ① 제13조에 따라 입학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등록 시기는 학기개시일 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를 선발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면접고사 및 필기시험 등의 자료에 의한다.

③ (삭제 2009. 3. 1)

④ 시간제 등록생은 본교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이하 “통합반 시간제 등록생” 이라 한다)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이하 “별도반 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9. 3. 1, 개정 2012. 3. 1)

⑤ 통합반 시간제 등록생은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내로 하며, 별도반 시간제 등록생은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내로 한다. (신설 2009. 3. 1, 개정 2012. 3. 1, 2024. 8. 26)

⑥ 시간제 등록생의 수업은 학기 단위로 하되 제1학기, 제2학기 및 계절학기로 구분하며, 매학기 등록하고 수업을 받는다. (신설 2009. 3. 1)

⑦ 별도반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수업은 주간수업・야간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현장실습수업 및 주말 등을 통한 집중학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시수는 1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

⑧ 별도반 시간제 등록생의 수업일수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주 이상으로 하여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9. 3. 1)

⑨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 3. 1, 2024. 8. 26)

⑩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 3. 1)

제 6 장 전공 선택・배정 및 전공 변경

제23조 (전공선택·배정)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07. 2. 28, 2008. 8. 4, 2012. 3. 1, 2017. 3. 1, 2019. 8. 26.)

1. 학부 또는 학과·전공이 제공하는 전공(신설 2019. 8. 26.)
2. 둘 이상의 학부 및 학과·전공이 서로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신설 2019. 8. 26)
3. 대학이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 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신설 2019. 8. 26.)
4.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정하여 이수하는 학생설계전공(신설 2024. 3. 1.)

② 광역학부로 통합모집하는 경우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 8. 4, 2019. 8. 26.)

③ 전공의 선택 및 배정의 절차와 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 8 . 26.)

제24조 (학부, 학과, 전공변경) ① 학생이 소속 학부, 학과, 전공의 변경을 원할 때에는 모집단위별로 허가할 수 있다. (단, 학사구조개혁으로 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0. 6. 1, 2003. 3. 24, 2007. 2. 28, 2010. 2. 22, 2011. 5. 12, 2017. 3. 1, 2018. 10 17, 2019. 8. 26, 2020. 3. 1)

② <삭제 2024. 8. 26>

③ <삭제 2020. 3. 1>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2. 25, 2010. 2. 22, 2011. 3. 1, 2018. 10. 17)

1. (삭제 2019. 8. 26.)

2. 예・체능계 특기자(실기우수자를 포함한다)로 입학한 자. 단, 학사구조개혁 학과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2011. 3. 1.)

⑤ 학부, 학과, 전공의 변경 시기・심사방법・제한 및 교육과정 이수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8. 4, 2010. 2. 22, 2019. 8. 26.)

[제목변경 2016. 3. 1]

제25조 (삭제 2000. 6. 1)

제26조 (삭제 2000. 6. 1)

제 7 장 휴학・복학・자퇴

제27조 (휴학절차) ① 질병, 군입대(지원입대를 포함한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상 수학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03. 3. 24, 2007. 2. 28)

②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 6. 1)

③ 일반휴학은 재학 중 2회에 한한다. 단, 창업에 의한 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4. 9. 1)

④ 휴학의 사유・절차 및 복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제28조 (삭제 2000. 6. 1)

제29조 (삭제 2000. 6. 1)

제30조 (삭제 2000. 6. 1)

제31조 (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 종료로서 복학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 내라도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③ 복학은 학기 초 30일 이내에 수강이 가능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 (자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8, 2008. 8. 4)

제33조 (제적)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00. 6. 1, 2008. 8. 4, 2012. 3. 1)

1. 학기 평점평균 1.5미만(학사경고)이 연속 4회인자. 다만, 재입학의 학사경고 횟수는 재입학 이후부터 계산한다.(개정 2008. 8. 4, 2011. 3. 1, 2019. 8. 26, 2021. 3. 1, 2024. 8. 26)

2. 타교에 입학한 자
3. (삭제 2012. 3. 1)
4.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5. 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 또는 수강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개정 2022. 3. 1.)
6. 장기간 무단결석한 자
7.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신설 2012. 3. 1)

제34조 (삭제 2000. 6. 1)

제 8 장 교육과정 이수

제 1 절 교 육 과 정

제35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비교과과정, 융합과정으로 나누며, 트랙제를 운영하는 학부·학과는 전공과정을 공통트랙과정과 심화트랙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개정 2002. 2. 25, 2017. 3. 1., 2020. 4. 2, 2024. 3. 1)

② 유치원 정교사(2급)·중등학교 정교사(2급)·전문상담교사(2급)·영양교사(2급)·보건교사(2급)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과정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1, 2002. 2. 25, 2013. 3. 1)

③ 학과(부) 또는 전공의 특성에 따라 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④ 교육과정의 구분·편성과 교과목의 개설·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07. 2. 28, 2008. 8. 4)

제36조 (이수단위)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 8. 4)

② 1학점의 이수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2. 2. 25, 2017. 3. 1)

1. 1시수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으로 한다.
2. 강의는 1학점 당 1시수로 한다. 단, 동일교과목 분반일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
3. 실험실습 및 실기 교과는 1학점 당 1시수를 기본으로 하되, 2시수를 초과할 수 없으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9. 3. 1)

제37조 (삭제 2000. 6. 1)

제38조 (삭제 2000. 6. 1)

제38조의 2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학위과정 및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2022. 3. 1.)

제 2 절 수 업

제39조 (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 8. 4)

제39조의 2 (교원의 수업시수) 교원의 수업시수는 매주 9시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 및 임용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 6. 1, 개정 2002. 2. 25)

제40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한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후 학과(부)장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강신청과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 3. 24, 2008. 8. 4, 2010. 2. 22)

제 3 절 시험과 성적

제41조 (시험) ① 학기 중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3. 1.)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 또는 수시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자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4. 23, 2024. 3. 1)

③ 장애학생들이 평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등의 지원을 한다. (신설 2011. 5. 12)

제42조 (학업성적)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출석상황 100분의 20, 수업태도와 시험 및 프로젝트, 역량수행활동 등 과정평가를 종합하여 100분의 80 비율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8. 4, 2013. 3. 1, 2020. 3. 1, 2024. 3. 1)

제43조 (출석성적) 한 학기 간 실제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6. 1)

제44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성적, 출석 성적, 프로젝트, 역량수행활동 등 과정평가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0. 6. 1., 2021. 3. 1, 2024. 3. 1)

등 급	실 적	평 점
A^{+}	95 이상	4.5
A^{0}	90 이상 - 95 미만	4.0
B^{+}	85 이상 - 90 미만	3.5
B^{0}	80 이상 - 85 미만	3.0
C^{+}	75 이상 - 80 미만	2.5
C^{0}	70 이상 - 75 미만	2.0
D^{+}	65 이상 - 70 미만	1.5
D^{0}	60 이상 - 65 미만	1.0
F	60 미만	0
P	합격	불계(不計)
I	미완성	불계(不計)

② 각 과목별로 D0급 이상을 과목 이수로 인정하고 그 미만의 평가(F)는 낙제로 한다. 또한 P 또는 F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P를 이수로 한다. (개정 2013. 3. 1)

③ 추가시험에 의한 성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4. 23.)

④ (삭제 2013. 3. 1)

⑤ (삭제 2008. 8. 4)

⑥ 합격, 불합격만을 표시할 교과목은 P(합격), F(불합격)로 표시하고 평점으로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⑦ 'I'(Incomplete)는 해당 학기의 성적평가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소정의 기한 내에 성적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I는 F 등급으로 전환된다. (개정 2008. 8. 4., 2021. 3. 1.)

⑧ 시험관리 및 성적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1.)

제44조의2 (강의평가) ① 강의평가는 매학기 2회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에 대한 사항은 강의평가규정 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8. 3. 1]

제 4 절 이수의 인정

제45조 (학점의 인정 및 시기) 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하며, 그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개정 2008. 8. 4)

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 (개정 2008. 8. 4)

③ 학점 인정과 과목 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④ (삭제 2008. 8. 4)

제46조 (특별시험) ① 학생은 특별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특별시험은 제1학년 학생에 한하여 입학과 동시에 실시하고 12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③ 특별시험의 과목·방법 및 특별시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제46조의 2 (학점인정제) ① 학생은 학점인정제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제의 구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00. 10. 30, 개정 2008. 8. 4, 2012. 3. 1, 2022. 3. 1.)

제47조 (학점교류 등의 인정) ①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6. 1, 2001. 10. 29, 2008. 8. 4, 2016. 3. 1)

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③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취득한 실적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2. 개정 2022. 3. 1.)

④ 학점교류 및 원격교육 취득학점의 인정시기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 8. 4)

제48조 (계절학기 학점인정) ① 매 계절학기 이수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다전공이수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교무처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1. 3. 26, 2014. 3. 1., 2022. 8. 25, 2024. 3. 1)

② 계절학기의 개설·수강절차·이수단위 및 수강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제48조의 2 (예비대학 교육과정 학점인정) ① 수시모집으로 입학이 확정된 자는 본교에서 개설한 예비대학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2. 3. 1)

② 예비교육과정에 의한 학점인정은 6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8. 4)

③ (조 신설 2002. 2. 25) (삭제 2008. 8. 4)

제49조 (학사경고) ① 매 학기마다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학사경고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이수하는 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6. 1, 2008. 8. 4, 2009. 3. 1)

② 학사경고 받은 학생이 다음 학기에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때에는 학사경고를 1회 해제한다. (개정 2008. 8. 4)

③ 학사경고에 따른 제재방법과 이수학점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제50조 (시간제학생 등록) (조 삭제 2008. 8. 4)

제51조 (졸업 및 수료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 이상, 166학점 이하로 하되, 이수학점은 교육과정표에 따른다. (개정 2001. 9. 24, 2002. 2. 25, 2003. 3. 24, 2004. 11. 26, 2010. 2. 22, 2011. 3. 1, 2014. 3. 1, 2019. 3. 1)

② 각 학년의 학기별 수료인정은 취득한 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1. 9. 24, 2002. 2. 25, 2003. 3. 24, 2004. 11. 26, 2008. 8. 4, 2011. 3. 1, 2014. 3. 1, 2018. 10. 17, 2019. 3. 1, 2020. 3. 1., 2020. 4. 23.)

수료학점 / 학년학기	120	122	124	126	128	129	130	132	166
1학년 1학기	15	15	16	16	16	16	17	17	17
1학년 2학기	30	30	32	32	32	32	34	34	34
2학년 1학기	45	45	48	48	48	49	51	51	51
2학년 2학기	60	60	64	64	66	66	68	68	68
3학년 1학기	75	76	80	80	82	82	85	85	85
3학년 2학기	90	92	96	96	98	98	102	102	102
4학년 1학기	105	108	112	112	112	114	118	118	118
4학년 2학기	120	122	124	126	128	129	130	132	136
5학년 1학기									153
5학년 2학기									166

③ (삭제 2008. 8. 4)

④ (삭제 2003. 3. 24)

⑤ (삭제 2008. 8. 4)

⑥ 계약학과 등으로 모집한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8.10.17., 2022. 8. 25.)

제52조 (복수전공)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2 내지 제3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고, 이수하고자 하는 제2 내지 제3의 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5, 2008. 8. 4, 2012. 3. 1)

② 복수전공의 적용범위·교과목·이수학점 및 수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제52조의 2 (부전공) ① 제1전공 외에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부전공의 범위·교과목·이수학점 및 수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제52조의 3 (석사학위과정의 연계이수) ① 소정의 자격을 갖춘 학생은 지도교수 및 해당과목 담당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생은 대학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와 학부의 해당과목 담당교수 및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③ 석사학위과정과의 교차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00. 6. 1)

제52조의 4 (학·석사연계과정) ①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한다. (조 신설 2012. 3. 1, 개정 2013. 3. 1)

②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3. 1)

제52조의 5 (연계전공) 연계전공의 신청 및 허가·학점인정·이수포기·학위인정에 관한 사항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조 신설 2012. 3. 1, 개정 2014. 3. 1)

제52조의 6 (심화전공) 단일전공 이수자가 각 전공의 최저이수학점에서 12학점 이상 초과 이수하는 것을 심화전공이라 한다. (신설 2020. 3. 1)

[본조신설 2020. 3. 1]

제52조의 7 (단기인증교육과정)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교육과정 및 모듈형 교육과정의 세부시행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3. 1. 개정 2022. 3. 1.)

[본조신설 2020. 3. 1]

제53조 (재・편입학생의 학점) ①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를 참작하여 학점을 재사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개정 2008. 8. 4)

② 편입학생에 대한 전적교 학점인정 및 이수하여야 할 학점에 관한 사항은 편입학생 시행규칙 정한다. (개정 2008. 8. 4)

제54조 (삭제 2000. 6. 1)

제55조 (졸업논문) ① 졸업예정 학생은 최종 이수학기 이전에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보고서・설계서・실기발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8. 4)

② 졸업논문의 작성・제출・심사방법과 실기발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제56조 (졸업과 학위) ① 본 대학교가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학사학위종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2010. 2. 22, 2011. 3. 1, 2013. 3. 1, 2014. 3. 1, 2015. 3. 1, 2016. 3. 1, 2017. 3. 1)

② 졸업의 시기는 매년 전・후기로 구분하고, 후기 졸업대상은 제1학기말에 졸업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고,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졸업요건과 이수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3. 3. 24, 2008. 8. 4)

제56조의 2 (학사학위취득 유예)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제56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하고자 할 경우 1학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1학기를 추가할 수 있다. (조 신설 2007. 2. 28, 개정 2008. 8. 4, 2011. 3. 1, 2012. 3. 1, 2019. 3. 1)

제57조 (졸업의 취소) 졸업생으로서 제4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다.

제 9 장 교 수 회

제58조 (설치) ① 본 대학교 학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단과대학 교수회로 나눈다. (개정 2006. 12. 30, 2008. 3. 5)

제59조 (구성) ①전체교수회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6. 1, 2008. 3. 5)

② 단과대학 교수회는 각 단과대학별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전임교원은 그의 전공영역과 관련된 단과대학에 소속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 3. 5)

제60조 (소집 및 정족수) ①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단과대학 교수회는 단과대학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 12. 30, 2008. 3. 5)

② 총장, 부총장은 단과대학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30, 2008. 3. 5)

③ 교수회는 전임교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3. 5)

제61조 (심의사항) ① 전체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학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단과대학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 12. 30, 2008. 3. 5)

1. 전공과목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대학평의원회 단과대학 교원대표 평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08. 3. 5)
4. 기타 단과대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2조 (회의록 작성) 각 교수회는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케 한다.

제63조 (위임규정) 교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3. 5)

제 10 장 교 무 위 원 회

제64조 (설치)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교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 2. 25, 2008. 8. 4)

제65조 (구성 및 운영)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 2. 25, 2008. 8. 4)

제66조 (삭제 2002. 2. 25)

제 11 장 외국인학생 및 위탁생

제67조 (외국인학생 입학) ① 외국인으로서 제5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력을 평가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으로서 대학편입학 자격이 있는 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학 할 수 있다. (신설 2000. 6. 1, 개정 2012. 3. 1)

제68조 (외국인의 과목이수) (삭제 2012. 3. 1)

제68조의 1 (삭제 2008. 8. 4)

제68조의 2 (외국인학생의 한국어과목 이수인정)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과목을 별도로 개설하여 졸업학점 중 교양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1, 개정 2017. 3. 1)

제69조 (삭제 2000. 6. 1)

제70조 (학칙의 준용) 외국인학생 및 위탁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제71조 (위탁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으로 위탁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

제72조 (삭제 2000. 6. 1)

제 12 장 공 개 강 좌

제73조 (목적) 직무·교양 또는 학술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8. 4)

제74조 (공개강좌 개설 등) 공개강좌의 과목·정원·기간·수강자격·수료증·수강료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제75조 (삭제 2000. 6. 1)

제76조 (삭제 2000. 6. 1)

제77조 (삭제 2008. 8. 4)

제 13 장 입학금·수업료·수험료 및 수수료

제78조 (입학금) 입학(재·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수업료와 함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제79조 (수업료) ① 학생은 매학기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 학년도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1)

③ 계절학기·시간제등록 및 학점인정 등에 따른 수업료 등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④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감액·징수방법 및 징수기일 등에 관하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 3. 24, 2008. 8. 4, 2011. 3. 1)

제79조의 2 (실습비) 수업료 이외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 수업외의 실험실습·실기연구 및 현장답사 등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용도와 징수금액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8. 4)

제79조의 3 (수험료) ① 입학지원자는 입학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고,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8. 4)

제79조의 4 (수수료) ① 대학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는 따로 정한다.

② 수수료는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현금·학교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등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는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08. 8. 4)

제80조 (삭제 2000. 6. 1)

제81조 (감면의 제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6. 1, 2008. 8. 4)

제82조 (등록금 반환) ① 기 납입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3. 3. 24, 2011. 3. 1)

②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등록한 때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2. 28)

제 14 장 장 학 금

제83조 (장학금 등)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과 학자금 마련이 곤란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는 학생 또는 우수인재육성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품행, 학업성적, 신앙심 등을 참작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거나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0. 6. 1, 2008. 8. 4)
② 장학금과 학자금의 종류와 금액·지급대상·지급방법 및 장학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학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제84조 (삭제 2000. 6. 1)

제85조 (삭제 2000. 6. 1)

제86조 (삭제 2013. 3. 1)

제87조 (지급의 정지)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징계된 경우에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8. 4, 2016. 3. 1)

제88조 (삭제 2000. 6. 1)

제 15 장 직제 및 교직원

제89조 (직제 및 교직원) 본 대학교의 직제와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으로, 교직원의 구분·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및 직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2016. 3. 1)

제 16 장 포상과 징계

제90조 (학생상벌위원회) 학생지도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과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벌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제91조 (포상) 품행이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 8. 4)

제92조 (징계) 학생은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학교봉사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② 징계의 사유·종류·절차 및 학교봉사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8. 4, 개정 2012. 3. 1)

제 17 장 학 생 활 동

제93조 (총학생회 및 학생단체)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를 둔다. (개정 2008. 8. 4)
② 본 대학교의 학생은 학생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③ 총학생회와 학생단체의 조직·운영 및 경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개정 2000. 6. 1)

제94조 (삭제 2000. 6. 1)

제95조 (삭제 2000. 6. 1)

제96조 (학생지도)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4. 23.)

제97조 (학생활동) ①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훈에 따라 학문을 익히고 덕성을 기르며, 학칙과 사회질서를 준수하며, 건전한 신체를 단련하여 국가사회의 모범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격도야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②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학생활동의 범위와 육성 및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제98조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에서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광고, 유인물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99조 (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제100조 (삭제 2000. 6. 1)

제 18 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등

제101조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두며 부속기관의 조직과 분장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0. 6. 1, 2004. 2. 24, 2005. 3. 30, 2005. 12. 30, 2008. 8. 4, 2010. 2. 22, 2011. 5. 12, 2012. 3. 1, 2013. 3. 1, 2013. 8. 26, 2016. 3. 1, 2018. 3. 1, 2020. 3. 1, 2022. 3. 1.)

1. 중앙도서관
2. 전산정보원
3. 평생교육원
4. 교육연수원
5. 보건진료센터
6. <삭제 2024. 8. 26>
7. 생활관
8. 출판부
9. 대학언론사
10. 연구실안전관리센터
11. <삭제 2024. 8. 26>
12.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13. ART SPACE HOSEO(신설 2013. 8. 26, 개정 2015. 9. 1)
14. 보육교사교육원

15. 어린이집
16. 호서대학교 직장어린이집(신설 2018. 3. 1)
17. 웰니스센터(신설 2020.03.01.)

② 본 대학교에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의 목적·명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며, 설치 연구소 현황은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명시한다. (개정 2008. 8. 4, 2009. 3. 1, 2010. 2. 22, 2011.5.12)

제101조의 2 (예비군연대) 본 대학교에 예비군연대를 두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다.
(조 신설 2009. 3. 1)

제101조의 3 (학생군사교육단) ① 본 대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 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본 대학교에 학군단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점을 취득하게 한다.
(조 신설 2009. 3. 1)

제101조의 4 (학위수여 및 요건) ① 총장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6. 3. 1)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4.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또는 동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

② 제1항 제3호의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학점을 통산한다.(신설 2016. 3. 1)
③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타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필수과목 포함하여 48학점이상 이수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6. 3. 1)
[본조신설 2016. 3. 1]

제101조의 5 (학위수여 절차) 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신청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서 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1, 개정 2019. 8. 26.)
② 총장은 학위수여 신청자에 대하여 학력인정 기준 적합 여부 및 이중학위 수여 여부 등에 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확인을 거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6. 3. 1, 개정 2019. 8. 6, 2019, 8. 26.)
[본조신설 2016. 3. 1]

제101조의 6 (학위의 종류 및 전공) ①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제56조 제1항의 학위종별 및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에는 유사전공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후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 3. 1 개정 2019. 8. 26.)
②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이 제56조 제1항의 학위종별 및 전공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보건과학계열은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 3. 1)
[본조신설 2016. 3. 1]

제101조의 7 (삭제 2019. 8. 26.)
제101조의 8 (삭제 2019. 8. 26.)
제101조의 9 (삭제 2019. 8. 26.)
제101조의 10 (삭제 2019. 8. 26.)
제101조의 11 (삭제 2019. 8. 26.)

제 19 장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장 신설 2004. 2. 24)

제102조 (산학협력단)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 8. 4)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 8. 4)
③ 산학협력단의 업무·재산과 회계·하부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8. 8. 4)
④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의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8. 4)

제102조의 2 (학교기업)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본 대학교에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기업별 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과(부) 또는 교육과정은 학교기업 설치 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1)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하여는 총 15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학기당 인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3. 1.)
③ 학교기업 운영성과를 결산한 결과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순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학교기업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8. 8. 4)

제102조의 3 <삭제 2018. 3. 1>

제102조의 4 (창업지원단) 총장 직속기구로 창업지원단을 설치하며 사업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3. 3. 1)

제102조의 5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사업단)) 총장 직속기구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을 설치하며 사업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3. 2. 6)

제102조의 6 (반도체특성화사업단) 총장 직속기구로 반도체특성화사업단을 설치하며 사업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임명한다.(신설 2024. 3. 1)

제 20 장 (장 삭제 2008. 8. 4)

제103조 (삭제 2008. 8. 4)

제 21 장 대학평의원회 (장 신설 2008. 3. 5)

제103조의 2 (설치) ① 대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8. 3. 5)

②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8. 3. 5)

제 21 장 2 자체평가 (장 신설 2009. 3. 1)

제103조의 3 (자체평가) ①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운영에 대한 평정을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조 신설 2009. 3. 1)

제 22 장 보 칙
(장 신설 2000. 6. 1, 장 변경 2004. 2. 24, 2004. 12. 6, 장 변경 2008. 3. 5)

제104조 (학칙개정) 이 학칙의 개정은 개정안을 입안하여 사전공고하고 규정심의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이 경우 학칙개정안은 관련부서장이 사전 공고한다. (개정 2008. 3. 5)

제105조(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부 칙

1. (시행) 본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규칙) 본 학칙에 관한 규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 본 학칙은 198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 본 개정학칙은 198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 본 개정학칙은 198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 본 개정학칙은 198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 본 개정학칙은 198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 본 개정학칙은 198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3조, 제5조 및 제4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 본 개정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 본 변경학칙은 199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에 받은 성적경고에 대하여는 제49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 본 개정학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 본 개정학칙은 199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1994학년도 사회과학대학 국제자원개발학과(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해외개발학과(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②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원예육종학과, 유전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③ 1995학년도 사회과학대학 소방행정학과 및 자연과학대학 전자계산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은 공과대학 안전공학계열 소방학전공 및 공과대학 전산공학계열 전자계산학전공에 각각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1994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대학 전자계산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은 학과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입학당시의 학과 소속으로 한다.

   ④ 1995학년도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94학년도 입학자 포함), 컴퓨터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전기공학과(야), 전자공학과(야) 및 예체능대학 응용미술학과, 실내디자인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은 공과대학 전기·전자·제어계열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전공, 정보통신계열 정보통신공학전공, 전파공학전공, 전산공학계열 컴퓨터공학전공, 안전공학계열 산업안전공학전공, 전기·전자계열(야) 전기공학전공(야), 전자공학전공(야) 및 예체능대학 산업디자인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1994학년도 이전에 해당학과(전파공학과는 제외)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은 학과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입학당시의 학과 소속으로 한다.

   ⑤ 이 학칙 시행이후 복학, 재입학하는 학생은 재적하던 학과가 동 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입학당시의 학과가 폐과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로 복학, 재입학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본 개정학칙은 199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1995학년도 이전 입학자중 복학, 재입학하여 1999학년도 이후 졸업하게 되는 학생은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7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본 개정학칙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단,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복학, 재입학으로 2000학년도 이후 졸업예정자는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8학년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본 개정학칙은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단,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복학, 재입학으로 2001학년도 이후 졸업예정자는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8학년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9년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본 개정학칙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단, 1998학년도에 국제지역학부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는 경제·통상학부 해외개발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복학, 재입학으로 2002학년도 이후 졸업예정자는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9년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1)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표1>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1999학년도에 경제통상학부에 입학하여 재적 중인 학생은 경제통상지역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제2공학부의 멀티미디어전공을 뉴미디어전공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1999학년도 이전에 전파공학과로 입학하였거나 전파공학전공으로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2000학년도 이후 제1학년에 복학, 재입학하는 학생, 2001학년도 이후 제2학년에 복학, 재입학하는 학생, 2002학년도 이후 제3학년에 복학, 재입학하는 학생, 2003학년도 이후 제4학년에 복학, 재입학하는 학생은 각각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1공학부 내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2000. 10. 30)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학부명칭은 해당 학부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전공명칭은 해당 전공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전공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통합된 전공명칭은 2001학번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2학년도 이후에 복학, 재입학하는 학생은 통합된 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01. 9. 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명칭 변경 및 학부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및 통합된 학부 명칭은 해당 학부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전공 명칭은 해당 전공에 재적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전공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소속 학부가 변경된 전공은 계열에 관계없이 변경된 학부에 소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1999, 2000, 2001학년도에 컴퓨터공학부 입학 후 휴학, 재입학한 학생으로서 2002학년도 이후에 컴퓨터공학부 제1학년으로 복학, 재입학하는 자는 전공배정신청 시 예술학부 애니메이션 전공을 지망할 수 있다.

제5조(학생모집 중지 전공에 대한 경과조치) 2001학년도 이전에 인문학부에 입학한 후 휴학, 재입학한 학생으로서 2002학년도 이후에 어문학부 제1학년으로 복학, 재입학하는 자는 전공배정신청 시 예술학부 문화기획전공을 지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전형으로 철학전공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제외한다.

부 칙 (2001. 10. 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1학년도 이전에 건축토목공학부에 입학 후 휴학, 재입학한 학생으로서 2002학년도 이후에 제1학년으로 복학, 재입학하는 자는 건축학과(5년제)를 선택할 수 있다.

제3조(예비대학교육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2의 규정은 2002학년도 수시모집 입학확정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과정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2002학번부터 적용한다.

제5조(졸업학점축소에 따른 경과조치) 제5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02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3. 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명칭 변경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0년 이전 무역학과, 2001, 2002년 전자상거래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디지털비즈니스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② 2001, 2002학년도에 전자상거래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전자상거래학사로 학위를 수여하며, 2000년 이전에 무역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경제학사로 학위를 수여한다.

③ 무역 및 전자상거래전공으로 입학하여 2003년 이후 복학, 재입학한 학생은 e-비즈니스전공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종전의 전공을 희망할 경우 대체과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무역 및 전자상거래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건축설계로 전공배정 받아 2003학년도 이후 2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 건축공학 또는 건축학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건축설계 희망자가 있을 경우 학부 내 연계과목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정보과학으로 전공을 부여받은 학생은 전공을 컴퓨터공학으로 변경한다.

⑥ 식품가공학전공은 식품생물공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⑦ 1999, 2000, 2001학년도 애니메이션전공을 부여받은 학생은 예술학부 애니메이션으로 학부를 변경한다. 단. 학부변경을 원치 않을 경우 입학당시 학부에서 전공을 재배정할 수 있다.

제3조(졸업증서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입학한 학생이 학부변경 후 변경된 전공에 복학하는 경우 변경전과 같은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2003. 11. 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전공 명칭은 해당 전공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학생모집중지 전공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04학년도 수시 1학기와 2학기에 인간개발학부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아동학전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2003학년도 이전에 인간개발학부(신학인간개발학부)에 입학한 후 휴학한 학생으로서 2004학년도 이후에 인간개발학부(신학인간개발학부) 1학년으로 복학하는 자는 전공배정 신청 시 인간개발학부(신학인간개발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청소년지도학전공, 노인복지학전공 및 아동학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

③ 2004학년도 수시 1학기와 2학기에 전기정보통신공학부 및 환경안전공학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벤처산업공학전공을 지원할 수 있다.

④ 2003학년도 이전에 전기정보통신공학부에 입학한 후 휴학한 학생으로서 2004학년도 이후에 전기정보통신공학부 1학년으로 복학하는 자는 전공배정 신청시 전기공학전공, 전자정보기술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정보제어공학전공 및 벤처산업공학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

⑤ 2003학년도 이전에 환경안전공학부에 입학한 후 휴학한 학생으로서 2004학년도 이후에 환경안전공학부 1학년으로 복학하는 자는 전공배정 신청 시 안전시스템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소방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및 벤처산업공학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과정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35조 ①항의 규정은 2004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11. 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학부(과)·전공명칭은 해당 학부(과)·전공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모집단위의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2004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부에 입학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2005학년도 이후 휴학한 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식품영양학과 및 광전자디스플레이공학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모집중지 학부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04학년도 이전에 전기정보통신공학부(야간)에 입학한 학생은 학부 모집중지와 상관없이 전기정보통신공학부(야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2004학년도 이전에 야간으로 입학하여 2005년 이후에 복학하는 경우 해당 학년도의 교육과정이 없을시 주간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상자 본인이 입학당시의 학부·전공으로 야간에 학업을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5. 3. 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51조 1항의 사회봉사학점은 2002학번 이전의 기본교양과정의 사회봉사 활동 실적은 일반선택 2학점으로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며, 등급화하지 않는다.

부 칙 (2005. 12. 1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학부(과)·전공명칭은 해당 학부(과)·전공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모집단위의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5학년도 이전에 학부로 입학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입학 당시 학부에 소속된 학과(전공)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② 2006학년도 컴퓨터공학부 수시1,2학기 입학생은 전공배정 시 컴퓨터공학전공에 배정하며, 정시 입학생은 전공배정 시 컴퓨터공학전공과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에 배정한다.

제4조(모집중지에 다른 경과조치) ① 2005학년도 이전에 컴퓨터공학부(야간) 또는 환경공학전공(야간)에 입학한 학생은 학부 모집중지와 상관없이 컴퓨터공학부(야간) 또는 환경공학전공(야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2005학년도 이전에 야간으로 입학하여 2006학년도 이후에 복학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이 없을시 주간에 재학한다.

부 칙 (2007. 2. 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학과, 학부 그리고 전공명칭은 해당 학과, 학부 그리고 전공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모집단위의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입학당시 학부에 소속된 학과(전공)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4조(야간 모집중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06학년도 이전에 행정학과(야간), 경제학과(야간), 해

외개발학과(야간), 경영학과(야간), 세무회계학과(야간), 환경안전공학부(야간)에 입학한 학생은 모집중지와 상관없이 행정학과(야간), 경제학과(야간), 해외개발학과(야간), 경영학과(야간), 세무회계학과(야간), 환경안전공학부(야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2006학년도 이전에 야간으로 입학하여 2007학년도 이후 복학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이 없을 시 주간에 재학한다.

제5조(공학인증 교육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 ④의 규정은 200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12. 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학과, 학부명칭은 해당 학과, 학부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모집단위의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에 인간개발학부에 입학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입학당시 학부에 소속된 학과(전공)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2008. 8. 4)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개정 전의 학칙이 적용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개정 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의무부담 등이 아닌 경우에는 개정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부설연구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설립·운영되고 있는 부설연구소는 이 학칙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3. 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변경된 학과(전공)의 명칭은 2009학년도부터 해당 학과(전공)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2010. 2. 22)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입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제적 당시의 모집 단위가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환되었거나 학(과)부의 폐지, 통합, 명칭, 계열 등의 변동으로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에는 재입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3조 제1항의 관련학과(부)로 배속시킨다.

부 칙 (2012. 3. 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2학년도 학과 통합 및 명칭 모집단위가 변경된 경우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년도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위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당해 모집단위가 없을 때에는 변경된 모집단위의 학과 및 전공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수 있다.

부 칙 (2013. 3. 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개정 전의 학칙이 적용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개정 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의무부담 등이 아닌 경우에는 개정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부설연구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설립·운영되고 있는 부설연구소는 이 학칙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6. 18)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8. 26)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대학, 학과, 학부명칭은 해당 학과, 학부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③ (전공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통합된 전공명칭은 2014학번부터 적용한다. 2014학년도 이후 복학, 재입학하는 학생은 통합된 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전공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소속 학부가 변경된 전공은 계열에 관계없이 변경된 학부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⑤ (교육과정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과정개편에 따른 적용은 2014학번부터 적용한다. 소속의 통합, 모집중지, 명칭변경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입학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 칙 (2014. 4. 2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5학년도에 변경되는 대학(자연과학대학), 학부(어문학부, 법정학부, 자연과학부, 건축토목공학부, 문화예술학부),학과의 명칭은 해당 대학, 학부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단, 한국언어문화전공과 기독교학과는 2015학번부터 적용한다.
③ (전공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통합된 전공명칭은 2015학번부터 적용한다. 2015학년도 이후 복학,

재입학하는 학생은 통합된 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전공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5학년도에 소속 대학 또는 학부가 변경된 전공(유아교육과, 응용통계학과,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사회복지학전공, 노인복지학전공)은 계열에 관계없이 재적중인 모든 학생이 변경된 대학과 학부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15학번 이전의 국어국문학전공과, 문화콘텐츠창작전공은 원소속으로 한다.
⑤ (교육과정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과정개편에 따른 적용은 2015학번부터 적용한다.
소속의 통합, 모집중지, 명칭변경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입학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 칙 (2015. 9. 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조개혁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사 구조개혁 및 특성화 규정에 의해 신설, 통폐합 되는 전공 중 법학전공, 경호전공, 경제학전공, 국제지역통상전공, 패션전공, 애니메이션전공의 2016년 2월 28일 이전 학번의 재적생, 2015년 12월 31일 이전 재입학자 및 다전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존 전공의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까지 유지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계열이 변경되는 경호전공 대상자는 변경된 계열의 졸업기준을 적용한다.
3. 2016년 3월 1일 이후 재입학자 또는 다전공자는 기존 전공의 재적생이 15명 미만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학년도부터 후속전공으로의 재입학 또는 다전공을 이수 할 수 있다.
4. 법학전공을 제외한 전공의 재적생은 기존 소속을 유지하며, 법학전공은 법경찰학전공으로 일괄 변경한다. 단, 예외 사항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5. 후속전공을 제외한 타 학과 및 전공으로 소속변경(전과)은 학칙 제24조에 따른다.
6. 법학전공 및 경호전공을 제외한 전공의 후속전공으로 소속변경(전과)는 후속전공에 소속변경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예외 사항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7. 경호전공은 후속 전공으로 소속변경 시 학칙 제24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졸업증서는 기존 전공의 학위명과 제1항 제4호에 의한 전공명으로 수여하며, 학생이 요청할 경우 졸업증서에 기존 전공명으로 표기 할 수 있다.

② 디지털디스플레이공학전공, 광전자디스플레이공학전공의 2016년 2월 28일 이전 학번의 재적생, 2015년 12월 31일 이전 재입학자 및 다전공자, 2016학년도 편입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입학 학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 2학년 편입생은 2015학년도, 3학년 편입생은 2014학년도 기준을 적용한다.
2. 졸업에 필요한 제반 명칭은 기존 전공명으로 한다.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항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하지 않은 예외사항 중 소속변경에 대한 사항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심

의·의결에 따르며, 졸업기준과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산학협력융합지구조성사업에 따른 경과조치) 산학협력융합지구조성사업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는 국방과학기술학과의 2016년 2월 28일 이전 학번의 재적생, 2016년 2월 28일 이전 재입학자 및 다전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입학 학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2016년 3월 1일 기준 재적생은 자동차ICT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하며, 예외 사항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졸업증서는 기존 소속의 학위명과 제2호에 의한 전공명으로 수여하며, 학생이 요청할 경우 졸업증서에 기존 전공명으로 표기 할 수 있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6학년도에 명칭이 변경되는 경제학과,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로봇공학과, 사회체육학과, 체육학과, 골프학과, 경호학과, 연극학과, 생명공학과, 제약공학과, 한방화장품과학과, 모바일소프트웨어전공, 문화콘텐츠창작전공, 생명과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2016년 2월 28일 이전 학번의 재적생, 2016년 2월 28일 이전 재입학자 및 다전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입학 학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졸업에 필요한 제반 명칭은 변경된 전공으로 한다.

제5조 (전공 및 학과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소속 대학 또는 학부가 변경된 전자공학전공, 전자디스플레이공학전공, 디스플레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해양IT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생명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영상미디어전공, 문화기획전공, 문화콘텐츠창작전공, 음악전공, 실용음악전공, 연극전공의 2016년 2월 28일 이전 학번의 재적생, 2016년 2월 28일 이전 재입학자 및 다전공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일괄 소속변경 한다.

부 칙 (2017. 3. 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9조, 제20조, 제36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허가 및 취소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에 입학허가 및 취소된 경우 개정이후의 학칙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구조개혁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7학년도 학사 구조개혁 대상인 법정학부, 법경찰학전공, 행정학 전공,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세무회계학전공, 글로벌창업전공, 응용통계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노인복지학전공,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생명과학과, 전기공학과, 디지털제어공학과, 안전보건학과, 화학공학과, 소방방재학과,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 로봇자동화공학전공,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디스플레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해양IT공학전공,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게임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학전공, 스포츠과학부, 사회체육전공, 체육전공,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골프전공, 융합예술학부, 음악전공, 실용음악전공, 연극전공, 문화미디어학부, 영상미디어전공, 문화기획전공, 문화콘텐츠전공, 산업애니메이션학과의 행정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016학번을 포함한 이전 재적생의 2016학년도 기준 단과대학명과 학부·학과·전공명은 졸업 시까지 유지하며, 3호에서 정한 후속학과에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이 있

을 경우에 한해 학생의 서면 동의를 받아 후속학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2. 2017학년도 1학기를 포함한 이후 재입학생과 편입생도 1호를 적용한다.

3.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생명과학과를 제외한 후속학과는 다음과 같다.

2016학년도 학부·학과·전공명		2017학년도 후속학과명	
단과대학명	학부·학과·전공명	단과대학명	학부·학과·전공명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법경찰학전공, 행정학전공	사회과학대학	법경찰행정학부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세무회계학전공		경영학부
	경영학부 글로벌창업전공	과학기술융합대학	글로벌경영공학부
	응통통계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노인복지학전공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디지털제어공학과		전기공학부 디지털제어공학전공
	안전보건학과		안전소방학부
	소방방재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부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		기계공학부
	기계공학부 로봇자동화공학전공		로봇자동화공학과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해양IT공학전공		ICT공학부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디스플레이공학전공	과학기술융합대학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게임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학전공		컴퓨터정보공학부
예체능대학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조형융합학부 실내디자인전공
	산업애니메이션학과		조형융합학부 첨단미디어전공
예체능대학	스포츠과학부 사회체육전공, 체육전공, 골프전공	예체능대학	스포츠과학부
	융합예술학부 음악전공, 실용음악전공, 연극전공		문화예술학부
	문화미디어학부 영상미디어전공, 문화기획전공, 문화콘텐츠전공		

4. 수학전공과 생명과학과의 교육과정은 2021학년도까지 유지할 수 있다.

5. 1호 내지 4호의 예외사항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8. 3. 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허가 및 취소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에 입학이 허가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이후의 학칙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구조개혁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사 구조개혁 및 특성화 규정에 의해 변경되는 학부인 바이오산업학부의 식품공학전공, 제약공학전공, 화장품과학전공, 생명공학전공의 2018년 2월 28일 이전 학번의 재적생, 2017년 12월 31일 이전 재입학자 및 다전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존 전공의 교육과정은 2022학년도 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교무처장의 승인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2018년 3월 1일 이후 재입학자 또는 다전공자는 기존 전공의 재적생이 15명 미만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학년도부터 후속학부로의 재입학 또는 다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3. 후속학부를 제외한 타 학과 및 전공으로 소속변경은(전과)은 학칙 제24조에 따른다.
4. 후속하는 광역학부로의 소속변경은 학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소속을 변경하며, 후속학부에 소속변경 대상학년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예외사항은 구조개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5. 바이오산업학부의 후속학부 및 세부 트랙은 다음과 같다.

2017학년도 학부·전공 명		2018학년도 후속학부 명	
학부	전공	학부	트랙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전공	식품제약공학부	식품공학트랙 제약공학트랙
	제약공학전공		
	화장품과학전공	화장품생명공학부	생명공학트랙 화장품과학트랙
	생명공학전공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학년도에 명칭이 변경되는 ICT공학부(정보통신공학부), 글로벌경영공학부(빅데이터경영공학부) 2018년 2월 28일 이전 학번의 재적생, 2018년 2월 28일 이전 재입학자 및 다전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입학 학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졸업에 필요한 제반 명칭은 변경된 전공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51조 개정사항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및 계약학과로 2018학년도에 신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03.0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졸업 및 수료학점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9학번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9학번 이전 학생의 졸업 및 수료학점은 입학 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되 교육과정 적용연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9년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26.)

제1조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9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변경된 단과대학 명칭은 해당 단과대학 모든 재적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과대학 폐지, 신설,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단과대학 편제 신설에 따라 인문융합대학 기독교학과, 기독교연예학과, 한국언어문화전공, 영어영문학전공, 중어중국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신학전공, 국어국문학전공, 문화콘텐츠창작전공에 소속한 재적생은 인문사회대학에 소속하고 기존 단과대학은 폐지한다.

② 단과대학 편제 신설에 따라 사회과학대학 경제학전공, 국제지역통상전공, 글로벌창업전공, 기술경영학전공, 노인복지학전공, 디지털비즈니스전공, 법경찰학전공, 법경찰행정학부,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산업심리학과, 유아교육과, 응용통계학과, 창업학전공, 청소년문화·상담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행정학전공 소속한 재적생은 인문사회대학에 소속하고 기존 단과대학은 폐지한다.

③ 단과대학 편제 신설에 따라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디지털기술경영전공, 글로벌통상학과 , 경영학전공, 세무회계학전공, 소속한 재적생은 경영대학에 소속하고 기존 단과대학은 폐지한다.

④ 2020년 3월 1일 이전 AI융합대학 조형융합학부 실내디자인전공에 소속한 재적생은 예체능대학으로 단과대학 소속을 변경한다.

⑤ 2020년 3월 1일 이전 AI융합대학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에 소속한 재적생은 공과대학 전자재료공학과로 단과대학 소속을 변경한다.

⑥ 2020년 3월 1일 이전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부에 소속한 재적생은 학생 서면동의를 받아 AI융합대학으로 단과대학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학부(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사구조개혁 및 특성화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 28일 이전 재적생의 학적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명칭변경에 따른 학부(학과)

변경 전(2017~2019학번) 학부/전공		변경 후(2020학번 이후) 학부/학과
어문학부	한국언어문화전공	한국언어문화학과
	영어영문학전공	영어영문학과
경영학부	디지털기술경영전공	디지털기술경영학과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학과
기계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부
전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기공학과
화학공학부		화학공학과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건축학전공	건축학과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	전자재료공학과
조형융합학부	실내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학과

변경 전(2017~2019학번) 학부/전공		변경 후(2020학번 이후) 학부/학과
문화예술학부		문화영상학부
		공연예술학부

2. 변경 전 학부(학과)의 명칭을 폐지하며 교육과정, 학적 등의 학사운영 입학 학년도 기준에 따르며 학부(학과) 명칭은 변경 후 기준으로 적용한다.
3. 문화예술학부 재적생은 입학 시 모집단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변경 후 학부로 학적을 변경한다.
제4조(학부(전공) 모집중지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학사구조개혁 및 특성화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 28일 이전 재적생의 학적은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1. 모집중지에 따른 학부(학과)

변경 전(2019학번 이전) 전공		변경 후(2020학번 이후) 학과
어문학부	중어중국학전공	중국지역학과
변경 전(2017~2019학번) 학부		변경 후(2020학학번 이후) 학과
스포츠과학부	사회체육트랙	사회체육학과
	골프스포츠산업트랙	골프산업학과
조형융합학부	첨단미디어전공	게임애니메이션융합학부

2. 변경 전 학부(전공)의 재적생은 학생 서면동의를 받아 변경 후 학부(학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3. 변경 전 학부(전공) 교육과정은 입학 학년도 기준으로 2022학년도까지 유지하며 2023학년도부터 변경 후 학부(학과)에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편성 운영한다. 단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4. 2023학년도부터 변경 전 학부(전공)의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자는 변경 후 학부(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5. 학사구조개혁 및 특성화 규정에 따라 학부(학과)를 변경할 경우 학칙 제24조(학과 및 전공변경)에 따른 전과 횟수 제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6. 변경 후 학부(학과)로 학적을 변경할 경우 졸업증서에 변경 전 학부(전공)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5조(학부(전공)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학사구조개혁 및 특성화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 28일 이전 재적생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변경 전(2017~2019학번) 학부/전공(트랙)		변경 후(2020학번 이후) 학부/학과	
법경찰행정학부			법경찰행정학과
전기공학부	디지털제어공학전공		시스템제어공학과
기계공학부	지능시스템공학트랙		
건축토목환경공학부	환경공학트랙		환경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부	게임콘텐츠트랙	게임애니메이션융합학부	

1. 변경 전 학부(전공)에 소속한 재적생은 변경 후 학부(학과)로 학적을 변경하고 법경찰행정학부, 디지털제어공학전공은 폐지한다. 단 광역학부인 기계공학부, 건축토목환경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부는 해당 트랙을 이수 중인 학생으로서 변경 후로 학적 변경을 원하는 자로 한다.
2. 변경 전 학부(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은 교육과정위원회 및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교양 및 전공학점(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변경 전 학부(전공)의 교육과정은 입학 학년도 기준으로 2022학년도까지 변경 후 학부, 학과에서 운영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4. 변경 전 학부(전공)의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자는 변경 후 학부,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5. 학사구조개혁 및 특성화 규정에 따라 학부(학과)를 변경할 경우 학칙 제24조(학과 및 전공변경)에 따른 전과 횟수 제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졸업증서는 변경 후 학부(학과)로 표기하며 학생이 요청할 경우 변경 전 학부(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부　　칙(2020. 4. 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과대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AI융합대학 정보통신공학부에 소속한 2020학번 재적생은 공과대학으로 단과대학 소속을 변경한다.
2. 2021년 3월 1일 이전 AI융합대학 게임애니메이션융합학부 애니메이션트랙에 소속한 재적생은 예체능대학으로 단과대학을 변경한다.

제3조(학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사구조개혁 및 특성화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1일 이전 재적생의 학적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명칭변경에 따른 학부

변경 전(2020학번 이전)		변경 후(2021학번 이후)
AI융합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AI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AI융합대학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		AI융합대학 전자및디스플레이공학부
AI융합대학 게임애니메이션융합학부	게임미디어SW트랙	AI융합대학 게임소프트웨어학과
	게임애니메이션벤처융합트랙	
	애니메이션트랙	예체능대학 애니메이션학과

2. 변경 전 학부(트랙)의 명칭은 폐지한다.
3. 교육과정은 입학 학년도 기준으로 변경 전 학부(트랙)교육과정을 변경 후 학부(과)로 적용하여 운영 한다.

제4조(학부 모집중지 및 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학사구조개혁 및 특성화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1일 이전 재적생의 학적은 다음과 같다.

1. 모집중지 및 신설에 따른 학부(학과)

모집중지(~2020학번)		신설(2021학번 이후)
식품제약공학부	식품공학트랙	건강기능식품학과
	제약공학트랙	제약공학과
빅데이터경영공학부	빅데이터통계트랙	빅데이터AI학과
	산업경영공학트랙	

2. 2021년 3월 1일 이전 재적생은 기존 소속을 유지하며, 교육과정은 입학 학년도를 기준으로 2023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24학년도부터 신설 학과의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편성 운영한다.
3. 식품제약공학부, 빅데이터경영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없을 경우 신설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4. 2024학년도부터 모집중지 학부의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자는 신설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제5조(제적) 학칙 제33조제1항제1호 학사경고 제적의 누적횟수는 2021년도 1학기 이후 학사경고부터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2학년도에 학부·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전자및디스플레이공학부, 로봇자동화공학과, 건강기능식품학과, 중국지역학과의 2022년 2월 28일 이전 학번에 해당하는 재적생, 재입학자 및 다전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022학년도부터 변경된 명칭은 다음과 같다.

변경전(2021학년도까지) 학부·학과명	변경후(2022학년도부터) 학부·학과명
전자및디스플레이공학부	전자융합공학부
로봇자동화공학과	로봇공학과
건강기능식품학과	식품공학과
중국지역학과	중국학과

2. 변경전 학부(과)의 재적학생은 변경 후 학부(과)로 학적을 변경한다.
3.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입학 학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학적관리 및 졸업에 필요한 제반 명칭은 변경된 학부·학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이 요청할 경우 졸업증서에는 기존 학부·학과 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제3조(구조개혁에 따른 경과조치) 공연예술학부 피아노트랙은 학사 구조개혁 및 특성화 규정에 의해 2022학년도부터 모집을 중지한다. 단, 교육과정은 2022년 2월 28일 이전 학번 재적생의 졸업시까지 유지한다.

제4조(현장실습 용어 정의에 따른 경과조치) 제47조 및 제102조의 2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8. 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집 중지 및 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학사 구조개혁 및 특성화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 이전 재적생의 학적은 다음과 같다.

1. 모집중지 및 신설(명칭변경)에 따른 학부(학과)

모집중지 (2022학년도까지) 학부·학과명	신설 및 명칭변경 (2023학년도까지) 학부·학과명
전자융합공학부	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안전소방학부	안전보건학과
	소방방재학과
빅데이터AI학과	빅데이터AI학부

2. 2023년 3월 1일 이전 재적생은 기존 소속을 유지하며, 교육과정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2025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26학년도부터 신설 학과의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편성 운영한다.
3. 전자융합공학부, 안전소방학부, 빅데이터AI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신설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4. 2026학년도부터 모집중지 학부의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자는 신설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집 중지 및 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학사 구조개혁 및 특성화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이전 재적생의 학적은 다음과 같다.

1. 모집중지 및 신설(명칭변경)에 따른 학부(학과)

모집중지(2023학년도까지) 학부·학과명			신설 및 명칭변경(2024학년도부터) 학부·학과명		
경영대학	디지털기술경영학과		경영대학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생명보건대학	화장품생명공학부	화장품과학트랙	생명보건대학	화장품과학과	
		생명공학트랙		생명공학과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공과대학	안전보건학과		공과대학	안전공학과(명칭변경)	
AI융합대학	로봇공학과		AI융합대학	지능로봇학과	
미래융합대학	기계ICT공학과		미래융합대학	산업안전공학과	기계안전트랙
	안전공학과				안전환경트랙

2. 2024년 3월 1일 이전 재적생은 기존 소속을 유지하며, 교육과정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2026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27학년도부터 신설 학과의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편성 운영한다.
3. 디지털기술경영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로봇공학과, 화장품생명공학부, 안전공학과, 기계ICT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신설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4. 안전보건학과로 소속한 재적생은 변경 후 학과로 학적을 변경하고 안전보건학과는 폐지한다.
5. 2027학년도부터 모집중지 학부(과)의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자는 신설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제3조(학부(전공)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학사구조개혁 및 특성화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이전 재적생의 학적은 다음과 같다.

모집중지(2023학년도까지) 학부·학과명		통합 (2024학년도부터) 학부·학과명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공과대학	전자재료공학과
공과대학	자동차ICT공학과	공과대학	미래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과

1. 2024년 3월 1일 이전 재적생은 기존 소속을 유지하며, 교육과정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2026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27학년도부터 통합 학과의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편성 운영한다.
2. 자동차ICT공학과, 신소재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통합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3. 2027학년도부터 모집중지 학부(과)의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자는 통합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부　　칙(2024. 8. 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표-1>

2025학년도 입학정원표

(천안캠퍼스 : 843명 / 아산캠퍼스 : 2,038명)

천안캠퍼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인문사회대학]	
기독교학과	15
한국언어문화학과	29
영어영문학과	51
중국학과	42
법경찰행정학과	107
사회복지학부	80
청소년문화 · 상담학과	35
유아교육과	40
산업심리학과	5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8
[경영대학]	
글로벌통상학과	79
경영학부	144
디지털금융경영학과	60
[예체능대학]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트랙	48
[미래융합대학]	
산업안전공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30
스마트경영학과	
기계반도체공학과	(정원외 전담학과)

아산캠퍼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인문사회대학]	
항공서비스학과	52
[생명보건대학]	
식품공학과	42
제약공학과	45
화장품과학과	44
생명공학과	44
식품영양학과	40
간호학과	80
물리치료학과	40
임상병리학과	51
동물보건복지학과	60

아산캠퍼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70
시스템제어공학과	38
안전공학과	54
소방방재학과	60
화학공학과	46
건축토목공학부	74
건축학과	44
환경공학과	36
기계공학과	57
미래자동차공학과	57
전자재료공학과	40
정보통신공학부	66
[AI융합대학]	
빅데이터AI학부	82
컴퓨터공학부	150
게임소프트웨어학과	80
전자공학과	60
반도체공학과	60
지능로봇학과	40
[예체능대학]	
사회체육학과	42
골프산업학과	21
디자인스쿨	155
애니메이션학과	75
문화영상학부	80
공연예술학부	
연극트랙	38
국제학부	(정원외 전담학과)
국제학트랙	
국제경영학트랙	
자유전공학부	15

산학융합캠퍼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국제산학융합학부	(정원외 전담학과)

합 계	2,881

2024학년도 입학정원표

(천안캠퍼스 : 875명 / 아산캠퍼스 : 2,006명)

천안캠퍼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인문사회대학]	
기독교학과	15
한국언어문화학과	30
영어영문학과	54
중국학과	44
법경찰행정학과	109
사회복지학부	80
청소년문화 · 상담학과	35
유아교육과	40
산업심리학과	5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0
[경영대학]	
글로벌통상학과	81
경영학부	144
디지털금융경영학과	60
[예체능대학]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트랙	51
[미래융합대학]	
산업안전공학과	12
사회복지상담학과	15
스마트경영학과	10
실용미디어학과	10

아산캠퍼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인문사회대학]	
항공서비스학과	52
[생명보건대학]	
식품공학과	43
제약공학과	45
화장품과학과	44
생명공학과	44
식품영양학과	40
간호학과	70
물리치료학과	40
임상병리학과	41
동물보건복지학과	60

아산캠퍼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70
시스템제어공학과	45
안전공학과	54
소방방재학과	60
화학공학과	48
건축토목공학부	76
건축학과	44
환경공학과	38
기계공학과	57
미래자동차공학과	57
전자재료공학과	40
정보통신공학부	69
[AI융합대학]	
빅데이터AI학부	85
컴퓨터공학부	150
게임소프트웨어학과	80
전자공학과	60
반도체공학과	55
지능로봇학과	40
[예체능대학]	
사회체육학과	42
골프산업학과	22
시각디자인학과	45
산업디자인학과	40
실내디자인학과	40
디지털프로덕트디자인학과	30
애니메이션학과	60
문화영상학부	80
공연예술학부	
연극트랙	40
국제학부 국제학트랙 국제경영학트랙	(정원외 전담학과)

산학융합캠퍼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국제산학융합학부	(정원외 전담학과)

합계	2,881

2023학년도 입학정원표

(천안캠퍼스 : 887명 / 아산캠퍼스 : 1,874명 / 산학융합캠퍼스 : 120명)

천 안 캠 퍼 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인문사회대학]	
기독교학과	15
한국언어문화학과	36
영어영문학과	60
중국학과	46
법경찰행정학과	115
사회복지학부	80
청소년문화·상담학과	35
유아교육과	40
산업심리학과	5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0
[경영대학]	
글로벌통상학과	90
경영학부	144
디지털기술경영학과	70
[예체능대학]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트랙 (보컬(남)/보컬(여)/건반/기타/베이스/드럼/작곡/EMP/레코딩&사운드디자인)	51
[미래융합대학]	
안전공학과	8
기계ICT공학과	4
사회복지상담학과	8

아 산 캠 퍼 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인문사회대학]	
항공서비스학과	52
[생명보건대학]	
식품공학과	43
제약공학과	45
화장품생명공학부	88
식품영양학과	40
간호학과	60
물리치료학과	40
임상병리학과	40
동물보건복지학과	45

아 산 캠 퍼 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74
시스템제어공학과	50
안전보건학과	60
소방방재학과	60
화학공학과	53
건축토목공학부	80
건축학과	44
환경공학과	40
기계자동차공학부	109
전자재료공학과	25
정보통신공학부	75
[AI융합대학]	
빅데이터AI학부	85
컴퓨터공학부	137
게임소프트웨어학과	60
전자공학과	70
반도체공학과	45
[예체능대학]	
사회체육학과	42
골프산업학과	22
시각디자인학과	45
산업디자인학과	40
실내디자인학과	40
애니메이션학과	45
문화영상학부	80
공연예술학부 연극트랙	40

산학융합캠퍼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40
자동차ICT공학과	40
[AI융합대학]	
로봇공학과	40

합 계	2,881

2022학년도 입학정원표

(천안캠퍼스 : 882명 / 아산캠퍼스 : 1,879명 / 산학융합캠퍼스 : 120명)

천 안 캠 퍼 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인문사회대학]	
기독교학과	15
한국언어문화학과	36
영어영문학과	60
중국학과	46
법경찰행정학과	115
사회복지학부	80
청소년문화·상담학과	35
유아교육과	40
산업심리학과	5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0
[경영대학]	
글로벌통상학과	90
경영학부	144
디지털기술경영학과	70
[예체능대학]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트랙	51
(보컬(남)/보컬(여)/건반/기타/베이스/드럼/작곡/EMP/레코딩&사운드디자인)	
[미래융합대학]	
안전공학과	6
기계ICT공학과	4
사회복지상담학과	5

아 산 캠 퍼 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인문사회대학]	
항공서비스학과	52
[생명보건대학]	
식품공학과	43
제약공학과	45
화장품생명공학부	88
식품영양학과	40
간호학과	50
물리치료학과	40
임상병리학과	40
동물보건복지학과	45

아 산 캠 퍼 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74
시스템제어공학과	50
안전소방학부	120
화학공학과	53
건축토목공학부	80
건축학과	44
환경공학과	40
기계자동차공학부	109
전자재료공학과	25
정보통신공학부	75
[AI융합대학]	
빅데이터AI학과	90
컴퓨터공학부	137
게임소프트웨어학과	60
전자융합공학부	140
[예체능대학]	
사회체육학과	42
골프산업학과	22
시각디자인학과	45
산업디자인학과	40
실내디자인학과	40
애니메이션학과	45
문화영상학부	80
공연예술학부	
연극트랙	25

산학융합캠퍼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40
자동차ICT공학과	40
[AI융합대학]	
로봇공학과	40

합 계	2,881

2021학년도 입학정원표

(천안캠퍼스 : 882명 / 아산캠퍼스 : 1,879명 / 산학융합캠퍼스 : 120명)

천 안 캠 퍼 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인문사회대학]	
기독교학과	15
한국언어문화학과	36
영어영문학과	60
중국지역학과	46
법경찰행정학과	115
사회복지학부	80
청소년문화·상담학과	35
유아교육과	40
산업심리학과	5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0
[경영대학]	
글로벌통상학과	90
경영학부	144
디지털기술경영학과	70
[예체능대학]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트랙	51
피아노트랙	
[미래융합대학]	
안전공학과	6
기계ICT공학과	4
사회복지상담학과	5

아 산 캠 퍼 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인문사회대학]	
항공서비스학과	52
[생명보건대학]	
건강기능식품학과	43
제약공학과	45
화장품생명공학부	88
식품영양학과	40
간호학과	50
물리치료학과	40
임상병리학과	40
동물보건복지학과	45

아 산 캠 퍼 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74
시스템제어공학과	50
안전소방학부	120
화학공학과	53
건축토목공학부	80
건축학과	44
환경공학과	40
기계자동차공학부	109
전자재료공학과	25
정보통신공학부	75
[AI융합대학]	
빅데이터AI학과	90
컴퓨터공학부	137
게임소프트웨어학과	60
전자및디스플레이공학부	140
[예체능대학]	
사회체육학과	42
골프산업학과	22
시각디자인학과	45
산업디자인학과	40
실내디자인학과	40
애니메이션학과	45
문화영상학부	80
공연예술학부	
연극트랙	25

산학융합캠퍼스

학과 / 학부	입학정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40
자동차ICT공학과	40
[AI융합대학]	
로봇자동화공학과	40

합 계	2,881